

같이 보기

: 고객과 함께, 건강한 세상②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와 함께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설명회



이수빈

대한산업보건협회
천안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충남노사민정협의회는 2010년에 제정되고,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이다. 노사민정은 노)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사)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민) 민간(공익)을 대표하는 자, 정) 정부(행정기관)를 대표하는 자를 뜻한다.

충남의 노사민정 주체들이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 일자리, 인적자원개발,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노사 관계가 경쟁력의 디딤돌이 되도록 산업평화를 구축한다. 또한 충청남도 특성에 맞는 충남 특유의 특성화 사업을 전개하며 충청남도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노사민정의 각 당사자가 되고 노사민정 주체 간의 협력 활성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충남



노사민정협의회는 다양한 생각을 모아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슈됨에 따라 2021년 11월 2일, 당진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당진상공회의소, 충청남도 노사민정협



의회,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근배 팀장이 진행하였으며 당진지역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민정 관계자 49명이 참석하였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내용 및 주요사항을 분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모색을 위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근배 팀장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넘고 국내 총생산 세계 10위의 우리나라가 산업현장에서는 사고로 연간 천여 명이 사망, 2020년 경제적 손실액이 약 30조 원이라고 하였으며 산재 사망자수는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2~3배 높은 수준으로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율은 낮으나 노동자 10만 명 당 사고사망자는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유는 은폐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이다. 산업재해통계가 실제 산재사고 통계라기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은 근로자 중에서 산재보상을 받은 비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의 발달하고 산재보상수준이 높은 나라는 산재사망률은 낮고 산업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주요사업 안내



노동권의증진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의 권익보호 사업

노사협력증진

- 노사분쟁 조정·중재를 위한 활동과 노사 간 주요이슈에 대한 의견교류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추진

일자리 창출 지원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사업 발굴 및 추진
- 사회적 대화를 주축으로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 지역 내 고용·노동 유관기관 교류 및 충남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체 운영지원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통해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기초지자체 협력 활성화 지원

- 15개 시·군의 노사민정 협력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공동사업 추진

산업안전보건 활동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 지원

-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캠페인 등 지역 내 산업재해를 감소를 위한 사업 추진
-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과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 내 일·생활균형 문화 조기정착 지원



재해율은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산재사고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산재보상 수준을 높이고 산재사망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확정 발표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882명)는 전년 대비 27명(3.2%) 증가,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 30명 증가한 458명(5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제조업은 5명 감소한 201명(22.8%),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714명(81%) 발생,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2명(35.4%),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28명(37.2%), '끼임' 98명(11.1%)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 인적특성으로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347명(39.3%)이 60세 이상이며 외국인은 94명(10.7%)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고사망재해는 20억 원 미만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재해가 전체의 278명(60.7%)을 차지,

120억 원 이상이 91명(19.9%), 20~120억 원 미만이 81명(17.7%)으로 나타났으며 재해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36명(51.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인물은 '건축물, 구조물 및 표면' 중 소분류에 속하는 비계 및 지붕, 대들보에 의해 각각 47명(20%)이 사망하였다.

제조업 사고사망재해는 5인 미만에서 38명(18.9%), 5-49인 규모에서 120명(59.7%)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8명이 사망하여 전체의 78.6%를 차지하였으며 '끼임' 60명(29.9%), 떨어짐 41명(20.4%)으로 나타났으며 '끼임'의 주요 기인물은 '일반제조 및 가공설비기계(프레스 및 절단기, 공작 및 절단기계, 금속가공 기계 등)에 의해 27명(45%)이 사망하였다.

이처럼 계속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



- 1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 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3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 4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5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6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 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책임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있으며 종사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물론,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포함된다.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

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으며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다. 그러나 2020년 한 해에만 2,06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 건강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소한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및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